

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I. 제안자 : 김정호 의원외 3인

II. 제안일자 : 2002. 6. 14

III. 근거법령 :

-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-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

IV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 :

법령 및 경기도조례가 개정되어 이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된 위원정수에 맞게 자치행정·산업건설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 :

현행 이천시의회 의원정수가 13명이나 2명이 증원되어 15명으로 변경·조정됨에 따라 현행 2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6명에서 7인으로 개정(안 제2조).

3. 검토의견 :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읍면동마다 1명으로 되어 있는 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인구 3만이상인 읍과 5만이상의 동에 대하여는 의원수를 1명씩 더 증원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부발읍과 창전동에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증원되어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의원정수에 맞게 개정하여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